

#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3월 14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### □ 제안이유

-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인 등록·관리 업무와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지원·관리업무를 결식아동 급식사업과 연계추진 하도록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,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중 장애인관련 수당 4종(장애수당, 장애인생계보조수당, 장애아동부양수당, 장애인자녀교육비)과 장애인의료비 지급 업무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 중 아동복지시설로 추가된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및 지원, 지도·감독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 1)
-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중 장애인 등록·관리 업무 동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 2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88호
의결 년월일	2006. 3. 17 (제125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3. 8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인 등록·관리 업무와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지원·관리업무를 급식사업과 연계추진 하도록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,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중 장애인관련 수당 4종(장애수당, 장애인 생계보조수당, 장애아동부양수당, 장애인자녀교육비)과 장애인 의료비 지급 업무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 중 아동복지시설로 추가된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및 지원, 지도·감독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 1)
-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중 장애인 등록·관리 업무 동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 2)

##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제1호 사회복지과란에 9. 장애인관련 수당란 및 10. 장애인의 의료비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9. 장애인 관련 수당	가. 장애수당 나.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다. 장애아동 부양수당 라. 장애인자녀 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</li> <li>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</li> <li>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5조</li> <li>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4조</li> </ul>	
10. 장애인 의료비	가. 장애인 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3조</li> </ul>	

별표의 제1호 가정복지과란에 7. 지역아동센터 신고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7. 지역아동 센터 신고 지원	가. 설치신고 나. 변경신고, 수리의 결과 보고 다. 폐지, 휴지의 신고 라. 폐쇄, 행정처분 등 마. 비용의 보조 바. 비용보조에 대한 보고 와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</li> <li>· 동법 시행규칙 제10조</li> <li>·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</li> <li>· 「아동복지법」 제21조</li> <li>· 「아동복지법」 제31조</li> <li>· 「아동복지법」 제33조</li> </ul>	

별표 제2호 사회복지과란에 3. 장애인등록·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기관
3. 장애인 등록·관리	가. 장애인 등록 처리  나. 등록 장애인 관리	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	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### 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

현					개 정 안				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무명	근거법 적 용	수입 기관	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입 기관
사 회 복지과	1. ~ 8. (생 략)			구청장	---- ----	1. ~ 8. (현행과같음)			----
	<신 설>					9.장애인관련 수당 지급	가. 장애수당 나.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다. 장애아동부양수당 라.장애인자녀 교육비	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 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 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5조 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4조	
	<신 설>					10. 장애인 의료비 지급	가. 장애인 의료비	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3조	

현행					개정안				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 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
가정 복지과	1. ~ 16. (생략)  <신설>			구청장	가정 복지과	1. ~ 6 (현 행과 같음)  7. <u>지역아동 센터 신고 · 지원</u>	가. <u>설치신고</u>  나. <u>변경신고, 수리의  결과 보고</u>  다. <u>폐지, 휴지의 신고</u>  라. <u>폐쇄, 행정처분 등</u>  마. <u>비용의 보조</u>  바. <u>비용보조에 대한  보고와 검사</u>	· 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  ·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·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  · 「아동복지법」 제21조  · 「아동복지법」 제31조  · 「아동복지법」 제33조	----

## 2. 부천시 사무의 동위임사항

현행					개정안				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
사회복지과	1. ~ 3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		동장	사회복지과	1. ~ 3. (현행과같음) 4. 장애인 <u>등록·관리</u>	가. 장애인 등록처리 나. 등록 장애인 관리	· 「장애인복지법」 <u>제29조</u>	----